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4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아황산염, 이산화유황 등 8종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규격 표준 수정 예고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 공고일자 : 2018년 3월 21일

○ 공고내용

(1) 본 공고는 식품첨가제, 가공과정 첨가물 국제 기준 및 대만 국민의 식습관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설정된 사항으로 아래 총 8가지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 및 규격 표준에 대한 수정 예정 공고 임

- 아황산칼륨 (Potassium sulfite),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bisulfite), 무수아황산수소나트륨 (Sodium bisulfite Anhydrous), 이황산나트륨(Sodium sulfite), 차아황산나트륨(Sodium Hydrosulfite), 메타중아황산 칼륨(Potassium Metabisulfite), 아황산구소칼륨(Potassium Bisulfite), 메타중아산 나트륨(Sodium Metabisulfite) 등 총 8종 식품 첨가물

- 상기 8종의 식품첨가물은 절임채소 및 발효채소에 사용 허용(신규 규정)

- 절임 채소 및 발효 채소 사용허용 범위 : 0.10g / kg 이하 (SO₂ 이산화황 잔류량으로 계산)

(2) 이산화황(Sulfur Dioxide)을 식품첨가물로 분류 (이산화황에 대한 식품에 첨가범위 및 사용 제한은 아황산염에 의거된 규정으로 따름)

(3)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 규정 및 제47조에 따라 상기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범위 및 제한량을 위반하였을 경우 NTD3 ~ 300만 원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시사점

- 대만 식품약품관리서는 8종의 이산화황 관련 식품첨가물을 향후 절임채소 및 발효 채소에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한국산 절임식품(김치 젓갈 등)에 대해 대만 수입 시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動物用藥殘留標準] 동물용 약품 잔류기준 규정 제3조 수정 공고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 공고일자 : 2017년 8월 16일
- 문서 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項) 제5항(款)에 의거함
- 공고내용
 -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동물용 약품 올라킨독스(Olaquinox), 락서손(Roxarsone),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등에 대해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대만 농업위원회 산하 식품약물관리서의 규정 내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번 공고를 통해 해당 동물용 약품이 가축, 가금류 등 동물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
 - 동 약품이 검출된 관련 동물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정, 공개 진열 등을 금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項) 제5항(款)규정에 따라 동물용약품잔류 허용량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 44조 제1항에 따라 NTD 6만元-2억元の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해당 동물용 약품 잔류허용량 기준표>

약품명	잔류 부위	동물종류	수정 조항 허용량(ppm)	현 조항 허용량(ppm)
Dimetridazole	근육	돼지	0	0.005
	간, 신장		0	0.005
	지방		0	0.005
Roxarsone	근육	돼지	0	0.005
	간, 신장		0	0.005
	지방		0	0.005
Olaquinox	근육	소, 돼지, 말	0	0.005
	간, 신장		0	0.005
	지방		0	0.005

○ 시사점

- 가축, 가금류 등 동물용에 사용되는 약품 및 잔류량을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식품 약물관리서 동 공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기 3종 동물용 약품과 관련 상품은 對 대만수출 시 주의 및 숙지가 필요